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추미애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5303호)

2025. 2.

외 교 통 일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법률안의 입법 취지	2
2. 개정안의 내용 검토	5
※ 참고자료	9
1. 한국군 해외파견 현황	9
2. 한국군 해외파견 연혁	14
3. UN PKO와 다국적군의 비교	16
4. 역대 국회 국군부대 해외파견 관련 입법현황	17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추미애의원 등 11인
2. 제안일자 : 2024년 11월 6일
3. 회부일자 : 2024년 11월 7일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 제60조제2항에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駐留)에 대한 동의 권을 가지도록 명시되어 있음.

그러나 국방부가 개인단위 해외파병은 국회의 동의 없이 국방부장관의 정책결정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을 개정해 훈령이 가장 상위법인 헌법에 위반되는 상황이 발생함.

한편, 외국의 전시상황에 대한 ‘개인단위로 활동하는 군인들의 결합이나 연합의 해외파견’은 군인인 국민의 생명권과도 직결되므로 이는 훈령의 형식이 아닌 법률에서 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전중인 국가에 ‘개인단위로 활동하는 군인들의 결합이나 연합의 해외파견’을 할 경우에도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 등).

Ⅲ. 검토의견

1. 법률안의 입법 취지

추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은 교전중인 국가에 ‘개인단위로 활동하는 군인들의 결합이나 연합의 해외파견’을 할 경우에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6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이하 “평화유지활동”이라 한다)	1. ----- ----- ----- ----- ----- ----- ----- ----- ----- ----- ----- -----
이란 국제연합의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결의에 따라 국제연합 사무총장이 임명하는 사령관의 지휘하에 국제연합의 재정부담으로 특정 국가(또는 지역) 내에서 수행되는 평화협정 이행 지원, 정전 감시, 치안 및 안정 유지, 선거 지원, 인도적 구호, 복구·재건 및 개발 지원 등을 비롯한 제반 활동을 말한다. 다만, 개별 또는 집단의 국가가 국제	-----. <u><단서 삭제></u>

<u>연합의 승인을 받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평화유지 또는 그 밖의 군사적 활동은 포함하지 아니한다.</u> 2. “파견부대”란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하기 위하여 해외에 파견되는 국군부대(개인 단위로 활동하는 군인들의 결합이나 <u>연합은 제외한다</u>)를 말한다. 3. ~ 5. (생략) 제6조(국군부대 파견의 국회 동의) ① 정부가 평화유지활동 참여를 위하여 국군부대를 해외에 파견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 ③ (생략)	2. ----- ----- ----- ----- --<u>연합 등을 포함한다</u>----- --. 3. ~ 5. (현행과 같음) 제6조(국군부대 파견의 국회 동의) ① ----- ----- -----<u>하거나, 개인단위로 활동하는 군인들의 결합이나 연합을 생명의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교전 중인 국가에 파견하고자 할</u>-----. ② . ③ (현행과 같음)
---	--

현행법은 국제연합 평화유지군 파견의 절차 및 근거법 마련을 위하여 제18대국회(2010.1.25.)에서 제정된 것으로, 헌법 제60조제2항을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방안으로 당초 국제연합 평화유지군과 다국적군의 파견 내용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함께 입법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외교부와 국방

부의 입장이 상이¹⁾하여 결국 합의되지 못하고 외교부 소관의 국제연합 평화유지군 활동으로 한정된 것임.

이에 국제연합 평화유지군은 현행법에 따라 국회 동의를 얻어 파견하고, 다국적군 등 그 밖의 부대단위 해외파견²⁾은 헌법 제60조³⁾에 따라 국회 동의를 얻어 파견하며, 개인단위 해외파견⁴⁾의 경우에는 국방부 훈령인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에 따라 개인파병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고 있음.

개정안은 국제연합 평화유지군 외의 국군의 해외파견(개인단위 파견 포함)에 대해서도 현행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려는 것으로, 관련한 입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⁵⁾되어 왔으며, 특히 개인단위 해외파견은 국회의 동의 없이 국방부의 훈령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지적이 있음.

국군의 해외 파견 관련 입법 방향에 관한 논의는 ① 현행법에 다국적군 평화활동과 그밖의 파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정도로 개정하는

1)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는 UN PKO활동과 다국적 평화유지활동은 서로 성격과 임무가 다르고, 정부내 소관과 국회내 상임위원회 소관이 구분되어 있으므로 각기 다른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었음.(제282회, 283회, 284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 참고)

2) 부대단위 해외파병(UN PKO, 다국적군 PKO, 국방교류협력) 절차
○ 부대단위 파병 요청 접수(UN 등) → 파병 검토 → 현지조사단 파견 → 파병계획 수립
→ 국가안전보장회의 보고 → 국무회의 심의·대통령 재가 → 국회 동의 → 파견 준비(부대 편성, 현지협조단 파견, 교육훈련 등)

3) 「대한민국헌법」

제60조 ①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②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4) 개인단위 해외파병 절차

○ 개인단위 파병 요청 접수(UN 등) → 개인파병 심의위원회(대상자 선발) → 파병 전 교육 → 파병

5) 참고자료 4. 역대 국회 국군부대 해외파견 관련 입법현황 참조

소폭 개정방안, ② 현행법을 전면적으로 개편하여 제명과 관할 등을 변경하는 등 새롭게 법률을 제정하는 통합입법 방안, ③ 현행법은 그대로 두고, 다국적군 평화활동 등에 관하여 별도의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분리 입법방안의 의견이 있는데,⁶⁾

개정안은 현행법을 소폭 개정하여 다국적군 및 개인 파견도 현행법의 적용을 받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임.

2. 개정안의 내용 검토

개정안은 정의 규정인 제2조제1호⁷⁾에서 “개별 또는 집단의 국가가 국제연합의 승인을 받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평화유지 또는 그 밖의 군사적 활동은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단서를 삭제함으로써, 현행법에 다국적군을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보임.

그런데, 현행법은 동 규정에서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을 “① 국제연합의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결의에 따라 ② 국제연합 사무총장이 임명하는 사령관의 지휘하에 ③ 국제연합의 재정부담으로 특정 국가(또는 지역) 내에서 수행되는 평화협정 이행 지원, 정전 감시, 치안 및 안정 유지, 선거 지원, 인도적 구호, 복구·재건 및 개발 지원 등을 비롯한 제반

6) 「국군 해외파병 법률의 제정 필요성 /입법방향」, 소병천, PKO저널 제7호, 국방대학교 PKO센터.

7)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이하 “평화유지활동”이라 한다)이란 국제연합의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결의에 따라 국제연합 사무총장이 임명하는 사령관의 지휘하에 국제연합의 재정부담으로 특정 국가(또는 지역) 내에서 수행되는 평화협정 이행 지원, 정전 감시, 치안 및 안정 유지, 선거 지원, 인도적 구호, 복구·재건 및 개발 지원 등을 비롯한 제반 활동을 말한다. 다만, 개별 또는 집단의 국가가 국제연합의 승인을 받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평화유지 또는 그 밖의 군사적 활동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음.

즉, 단서에서 언급한 “개별 또는 집단의 국가가 국제연합의 승인을 받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평화유지 또는 그 밖의 군사적 활동”은 다국적군⁸⁾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에 포함되는 개념이 아니라, 법적 해석이나 운영 과정에서의 혼란을 방지하고 용어의 경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명시적으로 제외한 확인조항에 해당하므로, 이를 삭제하더라도 다국적군이 현행법의 적용범위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은 아님.

따라서, 다국적군을 적용범위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별도의 목 신설 등 체계자구적 조정이 필요해 보임.

다음으로, 개정안은 제2조제2호⁹⁾의 “파견부대”의 정의에서 괄호 안의 내용을 “개인 단위로 활동하는 군인들의 결합이나 연합 등을 포함한다”로 개정하고, 제6조제1항¹⁰⁾에서 “개인단위로 활동하는 군인들의 결합이나 연합”을 “생명의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교전 중인 국가에 파견”하고자 할 경우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후단을 신설하고 있음.

이는 파견지가 전시 상황인 경우 파병 결정을 보다 엄중히 하기 위하여 개인단위 파병에 대해서도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취지로 이해됨.

그런데,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은 “교전이 끝난 지역”의 치안 및 안

8) 참고자료 3.UN PKO와 다국적군의 비교 참조

9)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파견부대”란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하기 위하여 해외에 파견되는 국군부대(개인 단위로 활동하는 군인들의 결합이나 연합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10)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제6조(국군부대 파견의 국회 동의) ① 정부가 평화유지활동 참여를 위하여 국군부대를 해외에 파견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을 위해 파견하는 것으로 “교전 중인 국가”에 파견한다는 개정안의 내용은 현행법의 평화유지활동의 개념을 벗어나는 문제가 있는바, 개정안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 법의 목적 및 정의조항, 제명 등에 대한 추가적인 수정이 필요함.

또한, 개인단위 해외파견은 ‘결합이나 연합’이 아닌 ‘1인 단위’로도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정부는 개정안의 취지대로 개인단위 해외 파견에 대하여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과 관련하여, 반년 이상 소요되는 부대단위 파견의 국회 동의절차가 개인 파견에도 적용되면 막대한 외교적·행정적 부담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개인단위 파견은 선발 절차가 약 2개월 이내의 짧은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동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임.

국방부는 개정안의 취지가 파견의 목적에 관계없이 교전 중인 국가에 ‘개인단위로 활동하는 군인들의 결합이나 연합을 해외파견’할 경우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현행법의 ‘평화유지활동’의 범위를 벗어난다는 입장임.

외교부는 현행법은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에 관한 법으로, 개정안이 본질적으로 다른 성격의 다국적군 참여를 포함할 경우, 동 법률의 근본 취지를 벗어나는 활동을 규율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이 아닌 다국적군 평화유지활동 및 국방교류협력 활동 임무 수행을

위한 파견의 경우 국방부 소관사항으로서 그간 국방위원회를 통해 별도로 파견 동의안이 처리되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 6788-5266

[참고자료 1]

1. 한국군 해외파견 현황(자료: 국방부)

□ 총 12개국 988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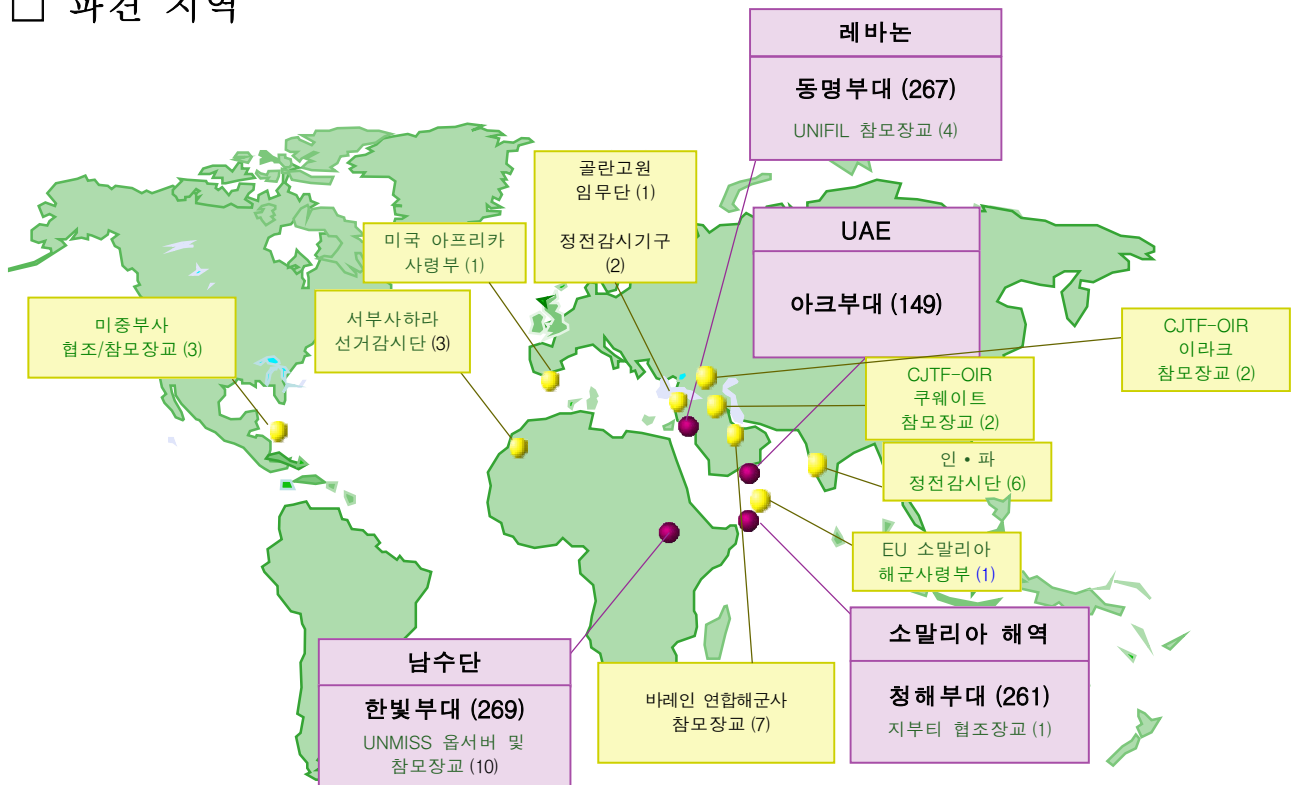
(2024. 12월 기준)

구 분				현재 인원	지 역	최초 파병	교대 주기
UN PKO	부대 단위	레바논 동명부대		267	티르	'07. 7월	8개월
		남수단 한빛부대		269	보르	'13. 3월	
	개인 단위	인·과 정전감시단(UNMOGIP)		6	이슬라마바드 등	'94. 11월	1년
		남수단 임무단(UNMISS)		10	주바 등	'11. 7월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4	나쿠라	'07. 1월	
		서부사하라 선거감시단(MINURSO)		3	라운 등	'09. 7월	
		콜란고원 임무단(UNDOF)		1	이스라엘	'23. 12월	
		정전감시기구(UNTSO)		2	이스라엘, 레바논	'24. 1월	
	소 계			562			
다국적군 PKO	부대 단위	소말리아해역 청해부대		261	소말리아해역	'09. 3월	6개월
		개인 단위	바레인 연합해군사령부	참모장교	7	바레인	'08. 1월
	지부티 아프리카사령부 연합합동기동부대 (CJTF-HOA)		협조장교	1	지부티	'09. 3월	
	미국 중부사령부		협조단	3	플로리다	'01. 11월	1년
	미국 아프리카사령부		협조장교	1	슈투트가르트	'15. 7월	1년
	쿠웨이트 다국적군지원사령부 (CJTF-OIR)		협조장교	2	아리프잔	'19. 12월	1년
	이라크 다국적군지원사령부 (CJTF-OIR)		참모장교	2	바그다드	'22. 8월	1년
	소 계			277			
	국방교류 협력	부대 단위	UAE 아크부대		149	아부다비	'11. 1월
소 계			149				
총 계				988			

※ 개인단위(42명) : UN PKO(26), 다국적군(16)

※ 부대단위(946명) : UN PKO(536), 다국적군(261), 국방교류협력(149)

□ 파견 지역



□ 용어

구 분	명 칭
인·파 정전감시단 (UNMOGIP)	United Nations Military Observer Group In India•Pakistan
남수단 임무단 (UNMISS)	United Nations Mission In South Sudan
레바논 평화유지군 (UNIFIL)	United Nations Interim Forces In Lebanon
서부사하라 선거감시단 (MINURSO)	United Nations Mission for the Referendum in Western Sahara(영) Mission des Nations Unies pour l'organisation d'un Referendum au Sahara Occidental(불)
연합합동기동부대-아프리카 뿔 (CJTF-HOA)	Combined Joint Task Force - Horn of Africa
국제해양안보구상 (IMSC)	International Maritime Security Construct
연합해군사령부 예하 CTF-151	Combined Task Force 151
EU 소말리아 해군사령부 CTF-465	Combined Task Force 465
쿠웨이트/이라크 다국적군 지원사령부(CJTF-OIR)	Combined Joint TF-Operation Inherent Resolve(이라크/시리아 내 IS 격퇴 작전)

《 개인파견 상세 현황 》

□ UN PKO 개인파견

○ 인도·파키스탄 정전감시단 (UNMOGIP) 참여

- 영국의 식민통치에서 독립 후 인도와 파키스탄의 북부 국경 지역인 카슈미르 일대를 상호 점령하면서 교전이 발생하여 UN 개입 및 중재, '49년에 UN 임무단 창설

- '94. 11월 최초 파병, 현재 7명(옵서버) 임무수행

※ 책임지역 내 경찰 및 감시활동, 정전협정 준수상태 감독

○ 레바논 임무단 (UNIFIL) 참여

- '78년 레바논 내전 수습 명분으로 시리아군, 이스라엘군의 레바논 주둔과 기독교 민병대·이슬람 민병대·레바논 정부군 가세로 내전이 심화되어 UN 임무단 창설

- '07. 1월 최초 파병, 현재 4명(참모) 임무수행

※ 정보, 기획, 연락 등의 참모업무 수행 및 동명부대 지원

○ 서부사하라 임무단 (MINURSO) 참여

- '76년 스페인 군 철수 후 모로코가 서부사하라 지역을 점령하자 무장 독립투쟁이 지속됨에 따라 '91년에 UN 임무단 창설

- '09. 7월 최초 파병, 현재 4명(옵서버) 임무수행

※ 선거활동 감시/감독, 경찰 및 감시활동, 정전협정 준수상태 감독

○ 남수단 임무단 (UNMISS) 참여

- '11. 7월 수단으로부터 남수단이 분리, 독립하여 분쟁감시와 남수단 재건지원을 위해 UN 임무단 창설

- '11. 7월 수단 임무단이 남수단 임무단으로 전환하여 현재 7명 (참모 5, 옵서버 2) 임무수행

※ 공병, 군수, 수송, 항공 등의 참모업무와 분쟁감시 및 연락업무 수행

○ 골란고원임무단 (UNDOF) 참여

- 골란고원 임무단으로 불리우는 유엔 교전중지 관찰부대(UNDOF)로 욘키푸르 전쟁 이후 골란고원을 사이에 둔 이스라엘과 시리아의 교전 중지협정 이행 여부를 감시하기 위해 1974년 창설된 부대
- 현재 1명(옵서버) 임무수행

○ 이스라엘 정전감시단 (UNTSO) 참여

- 1948년 5월 29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이스라엘과 중동 국가들의 중재를 위해 창설한 임무단으로 유엔 평화유지군의 날 (매년 5. 29.)은 유엔의 첫 임무단인 UNTSO 창설일이기도 함.
- 현재 2명(옵서버) 임무수행

□ 다국적군 개입과전

○ 연합해군사 (CMF)¹¹⁾ 참모장교 (바레인)

- '08. 1월 韓 마부노號 피랍 및 '09. 3월 청해부대 파병시 파견
- 파병인원 : 참모장교 4명 (중령 1, 소령 3)

※ 연합해군사령부 참모, 연합 작전계획 수립, 청해부대 교대 지원 등

○ CJTF-HOA¹²⁾ 협조장교 (지부티)

- '09. 3월 청해부대 파병시 파견
- 파병인원 : 협조장교 2명 (소령)

※ 청해부대 전투근무지원 등 제반 업무지원, 현지 동맹군 협조업무 등

○ 美 중부사 협조단 (미국 플로리다 탬파)

11) CMF : Combined Maritime Forces (아덴만과 소말리아 동부 해상에서 대해적작전을 수행하는 다국적군 부대)

12) CJTF-HOA : Combined Joint Task Force-Horn Of Africa (연합합동군-아프리카의 뿔)

- 美 9.11 테러 이후 '01. 11월 美 합참 요청에 따라 파견

- 파병인원 (2명) : 단장(대령 1), 협조장교(중령 1)

※ 한국군 파병 관련 부대 전개, 교대 및 기타활동 등 중부사 협조

※ 미 중부사 AOR(책임지역, Area Of Responsibility) : 중동 및 중앙아시아 총 20개국

○ 미(美) 아프리카사령부 협조장교(독일)

- 해외파병부대(남수단 한빛부대)을 지원하고 아프리카 현지에서 유기적인 작전협조체계 구축

- 파병 인원(1명) : 협조장교(중령)

※ 상황 발생 시 아프리카에 파병된 남수단 한빛부대, 개인 파병 인원(수단, 코트 디브아르, 서부사하라) 직·간접 지원

○ CJTF-OIR 협조장교 (이라크, 쿠웨이트)

- CENTCOM(Central Command) 지휘 아래 대 ISIS 작전을 수행하는 임무단

- 파병인원 : 참모장교 4명 (중령 1, 소령 3)

※ 정보환경평가계획 수립, 지휘통합통제 자문관 등

[참고자료 2]

2. 한국군 해외파견 연혁(자료: 국방부)

○ UN PKO 파병

파견부대	기 간	활 동(비고)
소말리아 상륙수부대 (공병)	'93. 7 ~ '94. 3	· UN PKO 활동에 필요한 방호·전기시설·도로 등 건설 · 지역주민을 위한 사랑의 학교 및 기술학교 운영
서부사하라 의료감시단	'94. 8 ~ '06. 5	· UN PKO 요원 의료 및 위생 지원 · 지역주민 방역, 전염병 예방
앙골라 공병대대	'95. 10 ~ '96. 12	· UN PKO 활동에 필요한 교량건설 및 보수
동티모르 상륙수부대	'99. 10 ~ '03. 10	· 현지 치안확보 및 인도적 구호활동 지원(최초 보병부대) * 다국적군에 참여('99. 10) 치안회복 후 2000년 2월부터 유엔 PKO로 전환
레바논 동명부대	'07. 7 ~ 현재	· 레바논과 이스라엘간 정전감시 · 인도적 지원(의료지원, 직업교육 등)
아이티 단비부대	'10. 2 ~ '12. 12	· 지진피해 복구 및 재건지원
남수단 한빛부대	'13. 3 ~ 현재	· 남수단(종글레이주) 재건 지원 · 인도주의적 활동 및 친한화 활동

○ 다국적군 PKO 파병

파견부대	기 간	활 동(비고)
월남전 (비둘기부대, 맹호부대, 청룡부대, 백마부대, 십자성부대, 백구부대, 은마부대 태권도 교관단)	'64. 9 ~ '73. 3	· 월남전 전투 및 전투근무지원(경보·공병·수송 등), 의료진 및 태권도 교관 지원
결프전 의료지원단	'91. 1 ~ '91. 4	· 다국적군 의료지원
결프전 공군수송단	'91. 2 ~ '91. 4	· 다국적군 항공운송 지원
아프간 해성부대	'01. 12 ~ '03. 9	· 대테러전의 효과적 수행을 위한 병력·장바·물자의 해상수송
아프간 청마부대	'01. 12 ~ '03. 12	· 대테러전의 효과적 수행을 위한 병력·장바·물자의 항공수송

파견부대	기 간	활 동(비고)
아프간 동의부대	'02. 2 ~ '07. 12	· 동맹군/현지주민 의료지원
아프간 다산부대	'03. 3 ~ '04. 4	· 동맹군 기지운영 지원, 인도적 대민지원
이라크 서희부대	'03. 4 ~ '04. 4	· 동맹군 기지운영 지원, 인도적 대민지원
이라크 제마부대	'03. 4 ~ '04. 4	· 동맹군/현지주민 의료지원
이라크 자이툰부대	'04. 4 ~ '08. 12	· 책임지역의 평화정착 및 재건 지원 * 자이툰 병원 운영, 학교 및 도로건설 등 주민 숙원사업 해결
이라크 다이만부대	'04. 10 ~ '08. 12	· 이라크 지원을 위한 병력장비·물자의 항공수송
소말리아 청해부대	'09. 3 ~ 현재	· 우리 선박의 안전항해 지원, 연합해군사 대해적작전 동참
아프간 오쉬노부대	'10. 6 ~ '14. 6	· 한국 PRT(지방재건팀) 주둔지 및 활동 보호

○ 국방협력 파병

파견부대	기 간	활 동(비고)
UAE 아크부대	'11. 1 ~ 현재	· UAE군 교육훈련 및 연합훈련
필리핀 아라우부대	'13. 12 ~ '14. 12	· 필리핀 태풍피해 복구 지원 및 인도적 지원

[참고자료 3]

3. UN PKO와 다국적군의 비교(자료: 국방부)

구 분	국제연합 PKO * Peace Keeping Operation	다국적군(MNF) 활동 * Multi-National Force
개념	UN(안보리) 임무지시(mandate)에 의거 UN이 직접 주도 * UN사무총장 책임(UN DPO에서 보좌)	UN(안보리) 임무지시(mandate)에 의거 또는 명분을 가지고 특정국가 또는 지역기구 주도 * 핵심이해당사국 주도로 창설 결정하되 안보리 결의로 승인받는 것이 관례
구성 근거	UN PKO 임무단은 안보리 결의에 따라 설치	핵심 이해당사국의 주도하에 다국적 군 창설이 결정되나, 안보리 결의로 승인받는 것이 관례
	당사국 동의 필요 * 안보리에 임무설치 요청	당사국 동의 필요 * 침략국의 동의는 불필요(예, 걸프전)
임무	적대행위가 종료된 지역에 정전 감시, 평화협정 이행감시, 전후 복구 등 임무 수행 * 접수국 동의 필요 * 다국적군 창설을 주도하려는 국가가 없을 경우 적대행위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유엔 평화유 지군을 파견하는 경우가 있음. (robust peace keeping)	침략행위 발생 또는 평화가 교란된 지 역에서 평화 회복 임무 수행(peace enforcement) * 접수국 동의 불필요 * 평화가 회복된 지역이라도 뜻있는 국 가들이 평화유지활동을 위해 다국적 군 파병하는 경우도 빈번
유엔통제 장치	유엔사무총장이 사령관을 임명하며, 안보리의 지침을 받아 작전 지휘권 행사	- 병력 공여국들이 자체 통제체계 수립 - 안보리는 임무범위 및 기한 재검토 기능을 통해 형식적 통제
지휘통제	UN안보리/사무총장(DPO) → UN임무단(UN특별대표→PKO사령부)	다국적군 주도국/지역기구 → 다국적군 사령부
무력사용 범위	자위목적으로만 무력사용	침략격퇴, 무력진압 등을 위한 적극적 무력 사용 가능
경비부담	UN 책임 * 병력공여국 선집행, UN 사후 경비보전	지역기구 / 해당국 책임
한국군 참여사례	• PKO : 아이티 단비부대: '10.2~'12.12 레바논 동명부대: '07.7 ~ 현재 남수단 한빛부대 : '13.3 ~ 현재 • 정전감시단 : 인·파, 그루지아 • 지원단 : 라이베리아, 아프간, 수단, 네팔 • 참모 : UNIFIL, UNMISS * 이라크, 아프간 경우에 비해 특정 위협사항은 없으나, 분쟁 당사자간 갈등 속에서 우발적/불특정 위협 상존	• 동티모르: '99~'03 • 아프간 동의·다산부대: '02.2~'07.12 • 이라크 자이툰부대: '04.4 ~ '08.12 • 소말리아 청해부대: '09.3~현재 • 아프간 오쉬노부대: '10.6~'14.6 * 아프간, 이라크 경우 대테러전 참여 하에서 평화건설 활동에 치중

[참고자료 4]

4. 역대 국회 국군부대 해외파견 관련 입법현황

소관위원회	발의 날짜	법안명	발의자	주요 내용	처리결과
국방위원회	2008-07-04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상비부대설치 법안	송민순 의원 등 25인	국제연합의 안전보장이사회나 총회의 결의에 의한 평화유지활동참여를 위한 국군상비부대를 설치	제278회국회(정 기회)상정(2008-1 1-26) 2012-05-29 임기만료폐기
외교통상 통일위원회	2008-07-10	국군부대의 국 제평화유지활 동 참여에 관 한 법률안	송영선 의원등 11인	(UN) 평화유지활동(PKO), 혹은 국제연합에 의하여 그 정당성 이 합의 혹은 승인된 국제적· 다국적 평화유지활동의 파견 근거 마련 PKO, 다국적군, 해외파견요원 (군인, 경찰, 민간인 포함)	제278회 국회(정기회) 상정(2008-09-17) 2009-12-02 철회
국방위원회	2009-09-22	국군부대의 해 외파견 절차 에 관한 법률 안	김장수 의원등 17인	국군부대 해외 파견의 경우, 이 에 필요한 기본적인 절차와 관 련사항을 명확히 규정 PKO, 다국적군, 해외파견요원 (군인, 군무원 한정)	미상정 2012-05-29 임기만료폐기
국방위원회	2009-12-02	국군부대의 해 외파견절차에 관한 법률안	송영선 의원등 10인	국군부대의 해외파견 절차와 관 련사항을 규정 PKO, 다국적군, 해외파견요원 (군인, 경찰, 민간인 포함)	미상정 2012-05-29 임기만료폐기
외교통상 통일위원회	2009-04-08	국제연합 평화 유지활동 파 견절차법안	송민순 의원 등 24인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나 총 회의 결의에 의거하여, 국제연 합의 재정부담으로 수행되는 평화유지활동에 한정 국군 부 대 파견 근거 마련	제285회 제1차 본회의 의결 (2009-12-29) 국제연합 평화유 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대 안) 통과
외교통상 통일위원회	2008-12-01	국제연합 평화 유지활동 참 여에 관한 법 률안	김무성 의원 등 15인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의 결 의에 의거하여 군 부대와 기타 요원의 파견에 관한 사항을 규 정	
외교통상 통일위원회	2011-07-15	국제연합 평화 유지활동 참 여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 법률안	서종표 의원등 12인	다국적군 파견에 관한 사항 함 께 규정, 개인 단위 파견시 국 회에 사전 보고 및 매년 정기 국회에 활동상황 보고	미상정 2012-05-29 임기만료폐기
국방위원회	2013-06-04	국군의 해외파 견활동 참여 에 관한 법률	송영근 의원 등 20인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외의 국 군의 해외파견활동(다국적군, 국방교류협력 등)의 파견 절차 및 관련사항을 규정	제321회 국회(임시회) 상정(2013-12-23) 2016-05-29 임기만료폐기
국방위원회	2016-08-25	국군의 해외파 견활동에 관 한 법률안	김영우 의원 등 11인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외의 국 군의 해외파견활동(다국적군, 국방교류협력 등)의 파견 절차 및 관련사항을 규정	제346회 국회(정기회) 상정(2016-11-08) 2020-05-29 임기만료폐기